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등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69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등	2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4.

(3) 회 부 일 : 2025.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약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u> ”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

<신 설>

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제14조의2(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

<신 설>

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4. (생략)	<u>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32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 11. ~ 14.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호1)에서는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일회용 컵, 이쑤시개 등 기타 위생용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 규모는 2021년 5조 2,570억원에서 2024년 8조 860억원으로 약 53.8% 증가하였으며, 위생용품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해외 직접구매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

< 최근 4년간 해외 직접구매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외직구 (전체)	5,257,402	5,945,356	6,815,842	8,086,261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그런데, 서울시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된 위생용품 총 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테무에서 판매된 일회용 면봉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6.7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쉬인에서 판매된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의 최대 43.3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되었음.

□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은 일반적인 수입 위생용품과 달리 위생용품 수입업자를 통한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²⁾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검사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반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2)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① 관련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③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동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④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과 동일하게 위해방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외위생용품의 직접구매 확대 및 위생용품의 종류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2025년 6월부터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23. 6.13. 개정) 시행으로,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되었는데,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이므로 직접구매 해외 문신용 염료에 대한 위해성 관리가 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4조의5제4항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5제4항과 같이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총리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과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위해 방지 관련 규정 비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u>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의5(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u>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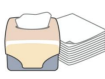
-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과 관련한 위해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원하고, 위해가 확인된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반입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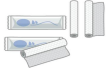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위생용품 통계 현황

□ 위생용품의 종류(총 21종)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1	세척제	과일, 채소,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4	일회용 컵	식품과 접촉하는 컵(식품이 담긴 컵은 제외)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일회용 숟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숟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6	일회용 젓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젓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7	일회용 포크	식품과 접촉하는 포크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8	일회용 나이프	식품과 접촉하는 나이프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9	일회용 빨대	식품과 접촉하는 빨대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10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및 미용 화장지(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	
11	일회용 행주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12	일회용 타월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3	일회용 종이냅킨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 냅킨(카테일용 냅킨 포함)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1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15	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식품용 기구 제외)	
16	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의약품 및 화장품 제외)	
17	일회용 기저귀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 포함]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의약품 제외)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0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21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속에 주입하는 것.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위생용품 영업 신고 현황

(‘24.12 기준)

구분	합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업소 수(개소)	3,113	1,354	1,582	177

☐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 현황

(‘24.12 기준)

대상	건수
세척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8,785

□ 수입검사 연도별 현황

연도	검사종류					부적합 (비율)	수입현황	
	총 수입 건수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무작위 검사		중량 (천톤)	금액 (백만불)
20년	13,613 (100%)	11,988 (88.1%)	33 (0.2%)	1,092 (8%)	500 (3.7%)	29 (0.2%)	101	300
21년	14,383 (100%)	11,735 (81.6%)	24 (0.2%)	1,280 (8.9%)	1,344 (9.3%)	45 (0.3%)	109	346
22년	14,358 (100%)	12,862 (89.6%)	26 (0.2%)	578 (4.0%)	892 (6.2%)	20 (0.1%)	107	357
23년	15,532 (100%)	13,955 (89.8%)	20 (0.1%)	786 (5.1%)	771 (5%)	28 (0.2%)	111	401
24년	17,359 (100%)	15,510 (89.3%)	24 (0.1%)	955 (5.5%)	870 (5.0%)	28 (0.2%)	113	416